

수입인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02-39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은행용

년 월 일

계	검토자	결재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

- 본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때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 표시합니다.)

1. 대출과목				2.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3. 대출(한도)금액	금 원										
4.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만료일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만료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 현재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5. 대출이자율 <input type="checkbox"/> '가계담보' 여신상품 추가 약정서 별도 기재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대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변동 ()기준 COFIX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대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3개월CDO유동수익률 + ()% <input type="checkbox"/> 3개월KORIBOR + ()% <input type="checkbox"/> 수신(수탁)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6. 이자 및 지연 배상금률 계산방법	가. 이자는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을 일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단위, <input type="checkbox"/> 월단위) 나.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며,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1조 제5호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지연배상금률이 최고지연배상금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 + ()% ■ 최고지연배상금률 : ()%										
7. 중도상환해약금	<input type="checkbox"/> 대상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9조에서 정하는 요율 및 계산방법 등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 (중도상환해약금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8. 대출실행방법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9. 상환방법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은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 개시 해당일에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 대출실행 후 거치기간없이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 시간 미감 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자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input type="checkbox"/> 매월 셋째주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다음날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제2조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종별	증서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약정일까지 입금누계액	담보한도액 (설정금액)	신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제3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6개월·1년·2년·3년·5년 변동금리부대출」에서 적용하는 「6개월·1년·2년·3년·5년 변동금리부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의 단순평균수익률에 「정책요소」를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6개월·1년·2년·3년·5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1.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급 응용채 유통수익률」을 말합니다.
2. 「정책요소」는 은행이 정책적으로 시장금리를 초과하여 수신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내용을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3개월 CD유동수익률」을 사용하는 「CD연동대출」에서 「3개월 CD유동수익률」이라 함은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동수익률」의 단순평균수익률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3개월 KORIBOR_r를 사용하는 KORIBOR연동대출」에서 「3개월 KORIBOR_r」라 함은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3개월물 금리의 평균값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수신(수탁) 금리 연동대출」은 수신(수탁)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외화대출 기준금리는 「LIBOR(또는 HIBOR)연동 기준금리」, 「외화자금조달연동 기준금리」, 「외화대출변동 기준금리」, 「Compounding SOFR연동 기준금리」로 구분합니다.

- 1. LIBOR(또는 HIBOR)연동 기준금리는 직전 영업일 기간별 LIBOR(또는 HIBOR)로 결정되며, 3개월·6개월 LIBOR(또는 HIBOR)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3개월·6개월 LIBOR」은 영국 런던 ICE(International Exchange), 3개월·6개월 HIBOR는 중국 홍콩 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말하고,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2. 외화자금조달연동 기준금리는 직전 영업일 3개월·6개월 LIBOR(또는 HIBOR)에 통화별, 기간별, 기준금리별로 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융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는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이하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3개월·6개월 LIBOR(또는 HIBOR) 및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3. 외화대출변동 기준금리는 통화별로 아래의 3개월·6개월 지표금리에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3개월·6개월 지표금리 및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가. Term SOFR주1(USD) : 파생상품시장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SOFR의 선도적 기간을 금리로, 직전 영업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주1) SOFR :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익일물(1일) 레포(Repo,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기반으로 신출된 금리로, 뉴욕 연방준비은행(Fed)이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나. EURIBOR(EUR) : 유로화(EUR)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내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2영업일 전 EMMI(The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TIBOR(JPY) : 일본 도쿄에 소재한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직전 영업일 JBATA(Japanese Bankers Association TIBOR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라. Term SONIA주1(GBP) : 파생상품시장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SONIA의 선도적 기간별 금리로, 직전 영업일 Refinitiv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주1) SONIA : GBP 통화 도매조달시장에서의 익일물(1일) 거래를 기반으로 신출된 금리로,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마. HIBOR(CNY) : 직전 영업일 중국 홍콩 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4. Compounding SOFR연동 기준금리는 이자계산기간 동안 뉴욕 연방준비은행(Fed)이 SOFR를 고시하는 각 날이(호)에서 「고시일」이라 함)의 SOFR를 일 복리 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계산에 사용되는 각 고시일의 SOFR는 그 고시일로부터 5고시일 전의 값을 적용합니다.
- ⑥ 「COFIX(Cost Of Fund Index) : 자금조달비용지수, 이하 "COFIX"라 함) 연동대출」에서 기준금리는 「단기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장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간장기 COFIX기준금리」로 구분하고 기준금리에 따라 매 3개월·6개월 1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단기COFIX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기준금리를, 「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장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간장기 COFIX기준금리」는 각각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장액기준 COFIX」「신간장기 COFIX」를 말하며, 그 적용 기간은 고시일 익일부터 각각의 금리변경 주기에 따른 은행연합회 고시일 까지로 합니다.

제7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금 지급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통장대출본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 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여신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④ 여신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지연 배상금 및 미수이자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8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가계당좌대출의 기본한도에 범위내에서 이 약정을 맺은 때에는 제3항의 거래만료일 1개월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거래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 지점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9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 받은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은점)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조 제7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비율」은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 전일까지 잔존 일수로 하고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는 각 할부금에 대하여 납입회차별로 계산하며 일부 중도상환시에는 분할상환기일에 먼저 도래하는 분할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구 분	부동산 담보	신용 및 기타담보
고정금리	1.4%	0.7%
변동금리	1.2%	0.6%

- 3. 「대출기간」은 제1조 제4호의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납입회차별 분할상환 기일) 대출전까지의 일수로 계산되며,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하였거나,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은행이 정하는 고정금리 인정기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회수 또는 상환하는 다음의 경우
 - 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기한 전에 회수 시
 - 나.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원리금 전액 반환 시
 4.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조건으로 여신금리를 가진한 경우
 5.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관계인이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
 6. 한도내 대출 수요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7.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 ④ 대출기간 중 담보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대출 취급시점[신규(증대), 기간연장, 재약정]의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2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캐시·갱신·분할·변환·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의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치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재권과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2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도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 ①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기간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자동연장시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이행을 치제하는 경우 지역배상금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02-39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고객용

년 월 일

계	검토자	결재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

- 본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상환원이 원로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때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 표시합니다.)

1. 대출과목				2.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3. 대출(한도)금액	금 원						
4.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만료일	<input type="checkbox"/> 20 년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부터 월 월 일	
5. 대출이자율 □ '가계담보' 여신상품 추가 약정서 별도 기재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대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대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만료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 현재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type="checkbox"/> 3개월CDO유동수익률 + ()% <input type="checkbox"/> 3개월KORIBOR + ()% <input type="checkbox"/> 수신(수탁)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6. 이자 및 지연 배상금률 계산방법	가. 이자는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을 일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단위, <input type="checkbox"/> 월단위) 나.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며,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1조 제5호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지연배상금률이 최고지연배상금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 + ()% ■ 최고지연배상금률 : ()%						
7. 중도상환해약금	<input type="checkbox"/> 대상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9조에서 정하는 요율 및 계산방법 등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 (중도상환해약금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8. 대출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9. 상환방법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 개시 해당일에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 대출실행 후 거치기간없이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input type="checkbox"/>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0. 이자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input type="checkbox"/> 매월 셋째주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다음날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
시간 미감
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원)

종별	증서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약정일까지 입금누계액	담보한도액 (설정금액)	신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제3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서명 또는 인)
--	--	----	-----------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6개월·1년·2년·3년·5년 변동금리부대출」에서 적용하는 「6개월·1년·2년·3년·5년 변동금리부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의 단순평균수익률에 「정책요소」를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6개월·1년·2년·3년·5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1. 「6개월·1년·2년·3년·5년 시장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급 응용채 유통수익률」을 말합니다.
2. 「정책요소」는 은행이 정책적으로 시장금리를 초과하여 수신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내용을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3개월 CD유동수익률」을 사용하는 「CD연동대출」에서 「3개월 CD유동수익률」이라 함은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동수익률」의 단순평균수익률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3개월 KORIBOR_r를 사용하는 KORIBOR연동대출」에서 「3개월 KORIBOR_r」라 함은 대출실행일 전 3영업일간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3개월물 금리의 평균값을 말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수신(수탁)금리 연동대출」은 수신(수탁)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외화대출 기준금리는 「LIBOR(또는 HIBOR)연동 기준금리」, 「외화자금조달연동 기준금리」, 「외화대출변동 기준금리」, 「Compounding SOFR연동 기준금리」로 구분합니다.

- 1. LIBOR(또는 HIBOR)연동 기준금리는 직전 영업일 기간별 LIBOR(또는 HIBOR)로 결정되며, 3개월·6개월 LIBOR(또는 HIBOR)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3개월·6개월 LIBOR」은 영국 런던 ICE(International Exchange), 3개월·6개월 HIBOR는 중국 홍콩 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말하고,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2. 외화자금조달연동 기준금리는 통화별 기간별 기준금리별로 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는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이하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3개월·6개월 LIBOR(또는 HIBOR) 및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3. 외화대출변동 기준금리는 통화별로 아래의 3개월·6개월 지표금리에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3개월·6개월 지표금리 및 외화자금 차입스프레드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변동되며, 이 자율은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가. Term SOFR주1(USD) : 파생상품시장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SOFR의 선도적 기간을 규리로, 직전 영업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주1) SOFR :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익일물(1일) 레포(Repo,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기반으로 신출된 금리로, 뉴욕 연방준비은행(Fed)이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나. EURIBOR(EUR) : 유로화(EUR)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내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2영업일 전 EMMI(The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TIBOR(JPY) : 일본 도쿄에 소재한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직전 영업일 JBATA(Japanese Bankers Association TIBOR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라. Term SONIA주1(GBP) : 파생상품시장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SONIA의 선도적 기간별 금리로, 직전 영업일 Refinitiv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주1) SONIA : GBP 통화 도매조달시장에서의 익일물(1일) 거래를 기반으로 신출된 금리로,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마. HIBOR(CNY) : 직전 영업일 중국 홍콩 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 4. Compounding SOFR연동 기준금리는 이자계산기간 동안 뉴욕 연방준비은행(Fed)이 SOFR를 고시하는 각 날이(호)에서 「고시일」이라 함)의 SOFR를 일 복리 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계산에 사용되는 각 고시일의 SOFR는 그 고시일로부터 5고시일 전의 값을 적용합니다.
- ⑥ 「COFIX(Cost Of Fund Index) : 자금조달비용지수, 이하 "COFIX"라 함) 연동대출」에서 기준금리는 「단기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액자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로 구분하고 기준금리에 따라 매 3개월·6개월 1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단기COFIX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기준금리를, 「6개월·1년·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액자기준 COFIX기준금리」「6개월·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기준금리」는 각각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주기별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액자기준 COFIX」「신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그 적용 기간은 고시일 익일부터 각각의 금리변경 주기에 따른 은행연합회 고시일 까지로 합니다.

제7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금 지급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통장대출본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 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여신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④ 여신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지연 배상금 및 미수이자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8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가계당좌대출의 기본한도에 범위내에서 이 약정을 맺은 때에는 제3항의 거래만료일 1개월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거래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 지점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9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은 문장에서 같다)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조 제7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비율」은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 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 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 전일까지 잔존 일수로 하고 분할상환대출인 경우에는 각 할부금에 대하여 납입회차별로 계산하며 일부 중도상환시에는 분할상환기일에 먼저 도래하는 분할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구 분	부동산 담보	신용 및 기타담보
고정금리	1.4%	0.7%
변동금리	1.2%	0.6%

- 3. 「대출기간」은 제1조 제4호의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납입회차별 분할상환 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되며, 대출개시일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하였거나,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은행이 정하는 고정금리 인정기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회수 또는 상환하는 다음의 경우
 - 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기한 전에 회수 시
 - 나.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로 원리금 전액 반환 시
 4.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조건으로 여신금리를 가진한 경우
 5.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관계인이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
 6. 한도거래 대출, 수요자금융을 상환하는 경우
 7.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 ④ 대출기간 중 담보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대출 취급시점[신규(증대), 기간연장, 재약정]의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2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캐시·갱신·분할·변환·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의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양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치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재권과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2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담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 ①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기간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자동연장시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범경일로부터 1개월이내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이행을 치제하는 경우 지역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